대학원 인공지능융합학과 운영 내규

개정 : 2026.02.20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내규는 단국대학교 창학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학원의 학칙 및 시행세칙에 따라, 인공지능융합학과의 합리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여 정리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제2조 (적용범위와 효력) 본 내규는 일반대학원 인공지능융합학과 석·박사과정 및 통합학위과정에 적용되며,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의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발생한다.

제2장 입학관리

제3조 (우수학생의 유치) 인공지능융합학과 소속 교수들은 인공지능융합학과 석·박사 및 통합 학위과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수 학생의 모집에 적극 노력한다.

제3장 교육과정 및 교·강사 배정

제4조 (교육과정) 인공지능융합학과에는 다양한 융합 교과목들로 교육과정을 구성한다.

제5조 (과목개설) 과목개설은 직전 학기에 개설할 교과목 신청을 받으며, 개설 교과목 수가 많아 조율이 필요할 경우 가장 최근에 개설되었던 교과목에게 가장 낮은 우선권을 준다.

제6조 (교·강사 배정) 교·강사 배정은 과목 개설시 개설을 요청한 교·강사를 우선적으로 배정하며, 동일 교과목에 대한 동시 개설이 요청될 경우 대학원 학과 교수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4장 논문지도

제7조 (지도교수의 선정) 지도교수 위촉 희망자는 지도 받기를 원하는 교수와 사전에 협의하여, 마감일 전에 논문지도교수 승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5장 자격시험

제8조 (종합학력시험 면제기준) 학과별 특성을 고려하여 학술지 등급, 대체기준 논문 편수, 저작 역할, 게재인정 일자 등 면제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성적으로 정한 면제기준 폐지).

2018년도 1학기부터 면제 기준

	면제 기준	면제 대상자
1	SCI급 학술지 논문게제 (교신저자, 제 1저자 포함) 시 면제	석사 및 박사과정 공통
2	학술진흥재단 등재학술지 (교신저자, 제 1저자 포함) 시 면제	석사 과정
3	학술진흥재단 등재학술지 (교신저자, 제 1저자 포함) 시 1과목 면제	박사 과정

2018년도 1학기 이전 면제 기준

	면제 기준	면제 대상자
1	각 과목당 90점 이상일 시 면제	석사 및 박사과정 공통

2018년도 1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2018년 1학기 이전 입학생은 학과 내규에 따른다.

제9조 (종합학력시험 출제와 채점) 석사과정은 전임교원의 과목 중 2개 과목 이상, 박사과정은 전임교원의 과목 중 4개 과목이상이어야 한다.

※지도교수의 과목을 1개 이상 선택 할 수 없음.

시험 방법은 필기시험와 구두시험을 시행하며, 구두시험은 과목별로 학과 전임 교원 2인이 참여하여 공동 출제 및 공동 평가하여야 한다. 통과를 위한 합격점수는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제10조 (외국어시험 과목) 내국인 학생에 한하여 공인어학성적 및 해외 수학(연수)로 인한 면제 신청 시 영어 성적 및 영어권 국가 이외에 추가로 다른 언어 선택이 가능하다. (예시 : 독어, 불어, 중어, 일어, 한문, 노어, 서반아어 중 복수선택 가능)

제6장 학위과정

제11조 (석사학위 과정 선택) 학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위논문 이외에 연구논문, 학위작품 중 하나 또는 복수로 선택하여 학과 내규로 문서화 한 후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 선택한 취득방법을 일부 또는 전면 수정하고자 할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 시행.

제12조 (석사학위 과정의 변경) 학위취득과정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단, 사유서 첨부 후 주임교수의 승인을 득할 경우 3학기 말까지 대학원장의 승인 하에 변경가능하다.

제7장 학위논문 심사 및 제출

제13조 (연구계획서 제출 및 심사) 학생은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기 전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논문 심사는 1회의 예비 심사와 1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야 한다. 박사 과정의 경우 필요하면 추가적인 중간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최종 심사는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시행한다.

제14조 (예비발표) 논문심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예비발표를 반드시 시행하며, 필요한 경우 2회 이상 예비발표를 시행할 수도 있다.

제15조 (논문심사위원) 논문 심사 위원은 석사의 경우 지도 교수 포함 3인, 박사의 경우 지도 교수 포함 5인으로 구성된다. 석사의 경우 모두 본교 전임 교수들로 심사 위원을 구성하며, 박사의 경우 외부 인사 2인을 포함한다. 이때 외부 인사는 박사학위 소지자야 한다.

제16조 (논문대체 심사절차) 석사학위 논문대체로 연구논문, 학위작품을 추가 선택할 경우 심사방법 및 절차를 학과별 내규로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7조 (논문대체 제출) 학과로 연구논문 또는 학위작품 제작보고서(작품사진 포함 필수) 제본분과 국문 파일을 제출하며, 제본은 겉표지 하드카바는 필요 없다.
학과에서 3년동안 보관 이후 폐기할 수 있도록 내규로 정한다.
※ 중앙도서관 제출 및 학위논문 온라인 등재 없음

제8장 학과 운영위원회

제18조 (의사결정 방식) 학과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의사결정은 학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전체교수 1/2 이상의 참석(위임 포함)과 참석 교수의 2/3의 찬성으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